

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7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구미경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
김혜지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
아이수루, 옥재은, 유만희,
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
윤종복, 이경숙, 이봉준,
이상욱, 이영실, 이은림,
이종태, 장태용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,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문상의 “이용자”를 “이용자 등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이용자”를 “이용자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<u>이</u> <u>용자</u>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 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</u> <u>용자</u> 등----- --.</p>